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6월 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월 8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6. 7.(월)	담당부서	규제샌드박스팀
담당과장	우성훈 팀장(044-203-4520)	담 당 자	박성환 사무관(044-203-4528)

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법령정비 요청제, 임시허가 전환 등 관련 규제 유예(샌드박스) 제도 개선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'21.5.21(금) 국회를 통과한 **「산업융합 촉진법」 개정법률안**이 오늘(6.8) **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**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법 개정은 실증을 통해 **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** 실증특례 기간 내에 **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**으로,

○ 실증특례 종료 전 '**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**'와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시 **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*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**하기 위한 것이다.

* 법령정비시까지 연장되는 임시허가와 달리 실증특례는 1회 연장(2+2년) 후 종료

□ **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주요 개정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❶ **(법령정비 요청제)**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(규제부처)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

❷ **(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)**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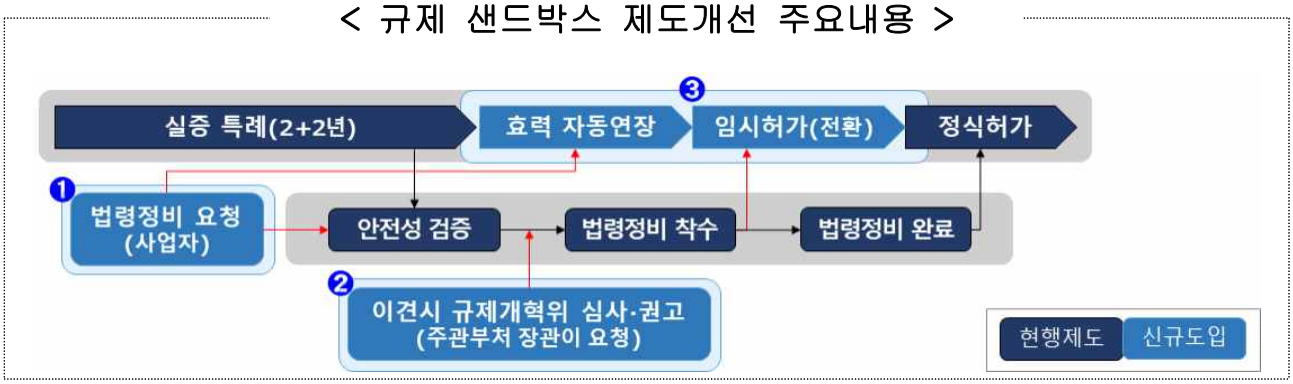
* 규제부처가 특례적용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 →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 필요 판단시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(이견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)

❸ **(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)**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*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 단,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

-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,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

<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주요내용 >



□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**산업융합 촉진법**」은 **6.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**을 거쳐 **9.16일부터 시행**된다.

○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**하위 법령 마련** 등 **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**하여 추진하고,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대한상공회의소, 협회·단체,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금번 **제도개선 사항 및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**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박성환 사무관(☎ 044-203-452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